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에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서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2.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제7조의3제1항제3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하여야”를 “제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4)에 따른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별표 2 제3호가목(7)의 설치기준란 본문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등”으로,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의4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를 “이 영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신 설>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

	차
마. ~ 아. (생 략)	사. ~ 차. (현행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 ---------- ---------- ---------- ---------- ---------- 제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4)에 따른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4